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2. 9. 14.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대행업체의 근로자 고용 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관심을 가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불만해소에 기여코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7항 “시가 대행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7항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 ----- ----- ----- ----- <u>있으며, 이 경우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 <u>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u>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개정안과 같음)
<단서 신설>		
1.~6.(생략)	1.~6.(현행과 같음)	1.~6.(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항은	② -----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다음 각 호와 같다. 1.~6.(생 략) <u><신 설></u> ③~⑥(생 략) <u><신 설></u>	-----. 1.~6.(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 대행업자</u> <u>준수 사항 및 필요한</u> <u>사항</u> ③~⑥(현행과 같음) ⑦ <u>시가 대행업무를 직</u> <u>접 운영으로 전환할 경</u> <u>우, 시는 해당 사업장</u> <u>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u> <u>에 대한 고용을 특별한</u> <u>사유가 없는 한 승계하</u> <u>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1.~6.(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③~⑥(현행과 같음) ⑦ <u>시장과 생활폐기물</u> <u>수집·운반대행업자는</u> <u>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u> <u>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u> <u>안정을 위하여 노력하</u> <u>여야 한다.</u>
--	--	---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제9조제2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대행업자 준수 사항 및 필요한 사항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4년 1월 1일로 한다.